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88호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 지원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1호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

발의연월일 : 2026. 11. 18.

발 의 의 원 : 성보빈・감규상・김인애・남재욱・류성국
문순규・변보미・심임숙・오춘근・이우완
이정희・정순욱・차중현・홍용채
황점복 의원(15명)

1. 제안이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 지원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1호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호의2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로당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시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신 설> 2. ~ 8. (생 략) ② (생 략)	제4조(경로당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 ---------- ---------- -.. 1. ----------. 다만, 제1호의2 및 ----------. 1의2.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창원시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중 경로당의 신축·매입에 관한 사항은 3년마다 포함한다.

1. 경로당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로당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경로당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로당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시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증축·개보수 또는 환경 개선비
4. 경로당 신설을 위한 신축·매입 사업비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내 여가에 필요한 물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정원 또는 시설규모 등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감독)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로당 지원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을 유발하는 등 경로당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경로당 이용정원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